##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48 발의연월일: 2020. 9. 7.

발 의 자: 정춘숙·박용진·송옥주

유동수 · 임종성 · 송갑석

김철민 · 서삼석 · 권칠승

박재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최근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위장전입, 재산은닉, 잠적 등의 방식을 동원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이행을 피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을 요청하도록 하며,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지급 이행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지방경찰청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함(안 제93조제1항).

법률 제 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취소하여야"를 "취소하거나 1 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	
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	
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	
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	
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	
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	
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	
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	
전면허를 <u>취소하여야</u> 한다.	<u>취소하거나 1년 이</u>
	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